

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(엄태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14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12.

발 의 자 : 엄태영 · 김재섭 · 서천호
강명구 · 박덕흠 · 유상범
이종배 · 권영진 · 정동만
김상훈 · 박성민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
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, 전원개발사업자가 실시계
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대
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, 주민대표, 관계 전문가
및 전원개발사업자를 포함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지선정
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·의결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과거 댐건
설 등 국가사업으로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고려가 이
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·의결 사항에 댐건설 등 국가사업으로
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입지선정 제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
는 등 댐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신규 송전선 및

발전시설 경유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5조의3제1항제1호의2 신설 등).

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3제1항 중 “주민대표”를 “주민 등 이해관계자 대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주민 등”을 “주민 등 이해관계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주민대표의 위촉·참석 거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”를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”로 한다.

1의2. 댐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입지 선정 제외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의3(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선정)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, <u>주민대표</u> , 관계 전문가 및 전원개발사업자를 포함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	제5조의3(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선정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<u>주민 등 이해관계자 대표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입지선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	②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 <u><신설></u>	1. (현행과 같음)
2. 입지선정에 대한 <u>주민 등</u> 의 의견청취 절차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	1의2. <u>댐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입지선정 제외에 관한 사항</u>
3. ~ 5. (생략)	2. ----- <u>주민 등 이해관계자</u> ----- ----- 3. ~ 5. (현행과 같음)

③ (생 략) ④ 전원개발사업자는 입지선정위원회가 <u>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주민대표의 위촉·참석 거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</u> 구성되지 못하거나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·의결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생략하고 입지선정을 할 수 있다. ⑤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⑤ (현행과 같음)
---	---